

## AUT교육과정인증위원회 규칙 개정 신규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제3조(기능) <u>AUT 교육과정</u> 이 본 대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<u>AUT 교육과정</u>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증 및 심의한다.	제3조(기능) 「 <u>이주대학교 학칙</u> 」 제44조제12항에 따른 <u>AUT 교육과정</u> 이 본 대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<u>해당 AUT 교육과정</u>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증 및 심의한다. (개정 2024.07.08.)	- 규칙적용범위 명확화 (AUT자체학위과정 불포함)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<u>다음 각 호의</u> 사항을 심의한다.  1. ~ 4. (생 략)	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「 <u>이주대학교 학칙</u> 」 제44조제12항에 따른 <u>AUT 교육 과정에 관해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07.08.) 1. ~ 4. (현행과 같음)	- 심의사항범위 명확화 (AUT자체학위과정 불포함)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은 기획처장, <u>AUT 교육과정</u> 이 있는 본 대학교 학장 및 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은 기획처장, 「 <u>이주대학교 학칙</u> 」 제44조제12항에 따른 <u>AUT 교육과정</u> 이 있는 본 대학교 학장 및 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4.07.08.)	- 당연직위원범위 명확화 (AUT자체학위과정 불포함)
<u>&lt;신 설&gt;</u>	<u>부 칙 &lt;기획팀-939호 : 2024.07.08.&gt;</u>  <u>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u>	- 부칙 신설